

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제5회 공채조례 폐지조례안
3. 안건요지 : 별첨참조
4. 검토의견 : 별첨참조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1995년 2월 일

산업건설위원회

전문위원류기현

大田廣城市第5回公債條例廢止條例案

檢 討 報 告 書

1995. 2 .

産 業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大田廣域市第5回公債條例廢止條例案

檢 討 報 告

이 條例案은 1995年 1月 24日 大田廣域市長으로 부터 提出되어
1995年 2月 2日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

1. 提案理由

- 이 條例는 新設道路 鋪裝 및 擴張工事 所要資金 充當을 위
한 公債發行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기 위하여 (1981.2.20)
制定하였음.
- 現行 地方財政法 第8條 第2項에 依據 商法 第487條에 地方
債證券의 償還請求權을 10年間 行事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
가 完成하토록 規定하고 있는 바,
- 이 條例에 最終(2次) 償還 開始日을 1984. 3. 1로 規定한 바
偿還時效가 消滅되어 이 條例 目的의 達成되었으므로 廢止
코자 함.

2. 主要骨子

- 大田廣域市 第5回 公債條例의 廢止
(施行日 : 公布한 날부터 施行)

3. 檢討意見

- 今番에 廢止코자 하는 大田廣域市 第5回 公債條例는 大田廣域市의 新設道路 鋪裝 및 擴張 被覆工事에 所要되는 資金의 充當을 위하여 1981年2月20日 制定한 것으로서 道路公債 最終償還開始日이 1984年3月1日로 規定하고 있는 바,
- 地方財政法 第8條 2項에 依據 商法 第487條에 地方債 證券의 償還請求權을 10年間 行事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되도록 規定된 바, 1994年 12月31日字로 償還時效가 消滅되어 條例의 目的이 達成되었으므로 廢止되어야 할 것으로 檢討됨.